

1953. 11. 8
제 3 총우편물인가



BA0 193177

편집 및 발행 총 무 처
전 화 70-4331
인 채 대 한 공 론 사
대 표 전 화 75-6161
판 보 부 칙 통 75-6315

제7220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1975. 12. 11. (목)

차 례

법령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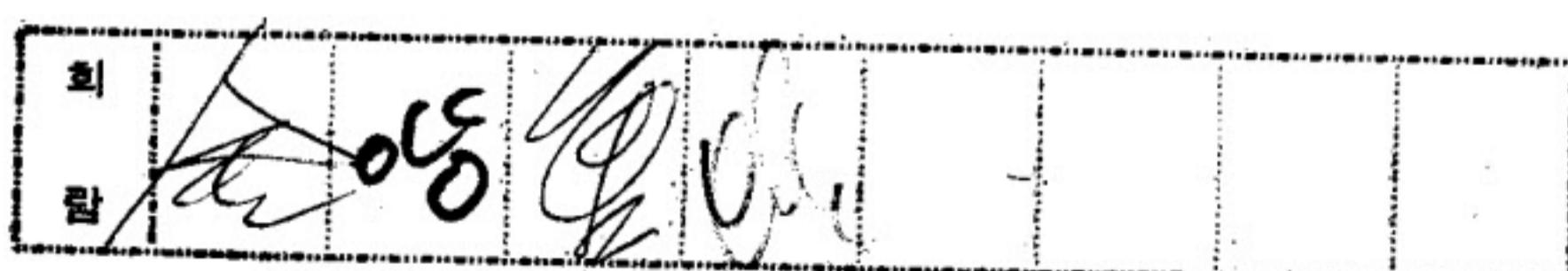
○조약 제551호(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3
부령	
○상공부령 제473호(기계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중개 정령).....	5
훈령	
○보건사회부훈령 제204호(해외 여행 심사요령).....	5

각 판

고시

○전설부고시 제195호(도로구역변경).....	6
○체신부고시 제436호(전신전화취급소설치).....	6
○체신부고시 제437호(전신전화취급소설치).....	7
○체신부고시 제438호(전화판서의 종류변경).....	7
○체신부고시 제439호(전화가입 구역변경).....	8
○체신부고시 제440호(요금제변경).....	8
○공업진흥청고시 제5, 937호(한국공업 규격 제정).....	8
○공업진흥청고시 제5, 938호(한국공업 규격 제정).....	8
○공업진흥고시 청제 5, 939호(한국공업 규격 제정).....	8
○공업진흥청고시 제5, 940호(한국공업 규격 제정).....	8

(이면 계속)



B6C3 A-1-4
1969. 1. 31. 승인

재 헌 민 국 정부

190×268 신문용지 50g/m²

○ 풍업진 흥청고시 제 5, 941호(한국 풍업 규격 제정).....	8
○ 풍업진 흥청시 고제 5, 942호(한국 풍업 규격 제정).....	8
○ 풍업진 흥청고시 제 5, 943호(한국 풍업 규격 제정).....	8
○ 풍업진 흥청고시 제 5, 944호(한국 풍업 규격 제정).....	8
○ 풍업진 흥청고시 제 5, 945호(한국 풍업 규격 제정).....	8
○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9호(공유수면 점용기 간연장허가).....	9
○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10호(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기간연장허가)	9
○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1 호(공유수면 점용 권리의 무양도 양수허가)	9
○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 호(공유수면 점용 권리의 무양도 양수허가)	9
○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3 호(공유수면 점용 권리의 무양도 양수허가)	9

공 고

○ 내부부공고제 61호 (기부금품 모집허가).....	10
○ 건설부공고제 131호(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10
○ 전파관리국 공고 제 20호(1975년도 제 4회 무선종사자자격 고시<임시> 합격자)	10

법 원

○ 대법원 고시 제 108호(공탁물 보관자지정 취소).....	16
------------------------------------	----

지방행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호(도시 계획 사업<학교> 시행 허가).....	16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호(도시 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7

사 명

○ 인사발령	18
--------------	----

부 록

○ 인사발령 (문교부).....	18
○ 영업자 납세번호증 반환명령 (내전세무서).....	18
○ 공시 최고	19
○ 제권 판결	22
○ 판 결	23

조 약

1975년 11월 24일 제7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년 12월 8일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주한영국대사관 스터디대사대리간의 자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년 1월 13일자로 소급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울산공파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5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김동조
(외무부장관)

◎조약제561호

대한민국정부와영국정부간의울산공파대학의설립에관한협정을연장하는협정

(아래 제의자서)

귀하

1971년 1월 12일자 자서교환에 의하여 성립되고 1972년 2월 4일 및 3월 21일자 자서교환에 의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파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년 1월 13일로부터 4년간 연장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자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자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할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영국측 회답자서)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자하의 자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71년 1월 12일자 자서교환에 의하여 성립되고 1972년 2월 4일 및 3월 21일자 자서교환에 의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파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년 1월 13일로부터 4년간 연장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자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자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할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영국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자하의 자서와 이 회답자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함을 자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자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75. 12. 11. (목요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OUL

December 8, 1875

Si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6 of the Agreement constituted by the Exchange of Notes of 12 January 1971 and am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f 4 February—21 March 1972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ulsan (now called Ulsan) Institute of Technology, I propose that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s amended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four years from 13 January 1975.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 further suggest that this Note and your Note in reply to that effec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entered into force on 13 January 1975.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 the assurances of my high consider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Honorable

H. W. Sturdy

Chargé d'Affaires a.i.

British Embassy

BRITISH EMBASSY

SEOUL

8. December. 1975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today'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6 of the Agreement constituted by the Exchange of Notes of 12 January 1971 and am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f 4 February—21 March 1972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ulsan (now called Ulsan) Institute of Technology, I Propose that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s amended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four years from 13 January 1975.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 further suggest that this Note and your Note in reply to that effec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entered into force on 13 January 1975."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ho therefore agree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entered into force on 13 January 1975.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H.W. STURDY

Chargé d'Affaires a.i.

His Excellency,

Mr. Dong Jo Ki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oul

4

부령

◎상공부령제473호

기계공업진흥법시행규칙증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5년 12월 11일

상공부장관

기계공업진흥법시행규칙증개정령

기계공업진흥법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기계공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기계공업진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전문부회) ①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공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전문부회를 둔다.

1. 일반기계 전문부회
2. 정밀기계 전문부회
3. 전기기계 전문부회
4. 수송기계 전문부회
5. 도입기계시설 국산화전문부회

②각 전문부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전문부회에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회장과 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당해 전문부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회의) ①회장은 당해 전문부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보건사회부훈령제204호

해외여행심사요령을 아래 발령한다.

1975년 12월 4일

보건사회부장관

해외여행심사요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여권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권자가 보건사회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외 여행자의 여권발급에 관한 의견회시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는 여행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처리절차) 심사에는 여행대상자의 출두나 구비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직접 외무부 공문만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문적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대상) 국외여행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제회의 참석자
2. 연구 및 연수목적의 여행자
3. 질병치료자 및 보호자
4. 기타 보건사회부 소관 고유업무에 관련된 업무수행상 해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참석자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개최하는 회의, 학술대회, 세미나등에 참석하는 자로서 관계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단, 자비여행자는 국내관계기관의 임원이거나 또는 동일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2. 연구 및 연수목적의 여행자

보건사회부 관계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외국의 관계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 및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3. 질병치료자 및 보호자

1) 국내치료불가능의 질병치료자와 그 보호자
2) 국내치료는 가능하나 치료비가 과다하여 부담이 불가능한 자로서 외국의 재정보증자가 치료비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하여진 자

4. 보건사회부 고유업무에 관련된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입양아 호송을 위한 당해기관의 일자원 및 후원회 회원으로서 해외여행 규제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자

<p>2) 당 부에서 허가받은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허가사항과 관계되는 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해외여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3) 외국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본부와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자</p> <p>4) 기타 국제문화교류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제5조 (제한기준) 해외여행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적 성격을 떤 시찰·경학 및 친선교류 2. 여행목적과 전연 상이한 기관 또는 상사로부터 발급한 초청장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 3. 자비로 여행하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자 <p>제6조 (문화복수여권) 문화복수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원 2.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7조 (의견회신) 여권발급권자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3일이내에 회신하되 관계</p>	<p>국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7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여행의 필요성, 적격성, 인원수, 기관, 여행지 등의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p> <p>제8조 (여권발급협조) 보건사회부 시체파 관련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또한 권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제한 및 권장에 관한 기준을 여권발급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협조를 한다.</p> <p>제9조 (전화, 구두조회)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의견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공문서규정의 전언통신의 예에 따라 사실을 확인 회신한다.</p> <p>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보건사회부에 제328호 민간인해외추천규정 및 동 제349호 해외여행심사기준은 폐지한다.
--	---

고 시

◎건설부고시제19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75년 12월 8일

건설부장관

구분	노 선 병 구	간 총 연 장 중 요 구역변경 (KM)	도로개량
구역			

현 구 역	나로도—광주선 전남 고흥군 동간면 우둔리 210-1부터 198-2 까지	0.4	도로개량
변경구역	" 전남 고흥군 동간면 우둔리 1-3부터 195-8까지	1.5	"
현 구 역	" 전남 고흥군 파역면 파역리 177-1부터 46-1 까지	0.75	"
변경구역	" 전남 고흥군 파역면 파역리 476-2부터 540-1 까지	0.7	"

*도면은 전라남도 전설국 도로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공람한다.

◎체신부고시제436호

공중통신업무위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신전화취급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1975년 12월 9일

체신부장관

1. 설치사항

취 급 소 명 위	치 취 급 업 무	취급시간
금서방곡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방곡리800	전신(구불, "배)통화 24시간
금서신아리전신전화취급소	전남산청군금서면신아리224	" "
금서오봉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오봉리60	" "
금서평촌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평촌리515	" "
금서향양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향양리50	" "
금서특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특리1017	" "
금서수칠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수칠리420	" "
금서지막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지막리454	" "
금서자혜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산청군금서면자혜리523	" "
거제옥산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거제군거제면옥산리1078	" "
거제오수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거제군거제면오수리489	" "
거제외간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거제군거제면외간리102	" "
율곡제내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합천군율곡면제내리246	" "

2. 시행일자 : 1975년 12월 10일

◎체신부고시제437호

공중전기통신업무위탁규정 제 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신전화취급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1975년 12월 9일

체 신 부 장 관

1. 설치사항

취 급 소 명 위	치 취 급 업 무	취급시간
월배도원동전신전화취급소	경북달성군월배면도원동1137	전신(구불, 투배)통화 24시간
월배대곡동전신전화취급소	경북달성군월배면대곡동626	" "
이산두월동전신전화취급소	경북영주군이산면두월리875-1	" "
이산내림리전신전화취급소	경북영주군이산면내림리532	" "

2. 시행년월일 : 1975년 12월 15일

◎체신부고시제438호

전신전화규정 제3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
판서의 종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년 12월 9일

체 신 부 장 관

1. 변경사항

국	명	현급지	변경급지	비	고
구리우체국	1	2			

2. 시행년월일 : 1975년 12월 15일

◎체신부고시제439호

전신전화규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1975년 12월 9일

체신부장관

1. 변경사항

전화가입구역 확장

국명도명군명	읍면명리,	동	명(지번)
대가경남고성	대가 송계리(산 75번지에 한한다)		
청덕	합천 창덕 두곡리(490-492 494, 540 545-550, 651-660번지에 한한다)		
	화회리(652, 904-908, 910, 913-915, 920, 934번지에 한한다)		

2. 시행년월일 : 1975년 12월 15일

◎체신부고시제440호

전신전화규정 제3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년 12월 9일

체신부장관

국명	변경전		변경후	
	교환방식	요금제	교환방식	요금제
무주	자석식	정액요금제	자동식	도수요금제

2. 시행년월일 : 1975년 12월 14일

○공업진흥청

공업표준화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년 12월 8일

공업진흥청장

고시번호	고시내용		비고
	규격번호	규격	
5,937	KS M 6503	고무용어(Ⅱ)	1975. 12. 8 제정
5,938	KS M 6682	고무걸창포화 및 총고무화의 신골칫수	" "
5,939	KS M 6659	방진고무의 동적성질 시험방법	" "
5,940	KS M 6660	팽창고무의 물리시험방법	" "
5,941	KS M 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 시험방법	" "
5,942	KS M 6681	고무걸창포화 및 총고무화의 표준호칭칫수	" "
5,943	KS M 6515	합성고무 B.R.의 시험방법	" "
5,944	KS M 6572	아교 및 제라린	" "
5,945	KS M 6626	자동차용 고무재료	"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9호

공유수면 점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5년 12월 6 일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장

연장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종류 면적 목적 연장허가기간 허가를받은자주소, 성명

1975. 12. 6 충남서천군장항 해 면 473.56 조선장부 1975. 12. 26 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동
읍원수동 317의 경지 ~ 1976. 12. 25 349번지 임원재
4번지 지선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10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허가 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5년 12월 6 일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장

연장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종류 면적 목적 연장허가기간 허가를받은자주소, 성명

1975. 12. 6 충남서천군장항 해 면 96.8평 선가대 1975. 11. 19 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동
읍원수동 317의 설치 ~ 1975. 11. 18 349번지 임원재
4번지 지선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1호

공유수면 점용권리 의무 양도 양수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5년 12월 5 일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

양도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 종류 목적 양수인 주소, 성명 양도인 주소, 성명

1975. 12 전북옥구군미면산북리 해 면 저목장 서울특별시관악구노량진 전북군산시장미동11번지
3527-75번지 지선 동 294-54번지 한일목재 계림산업(주) 차수원
재공업사 오창옥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호

공유수면 점용권리 의무 양도 양수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5년 12월 5 일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

양도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 종류 목적 양수인 주소, 성명 양도인 주소, 성명

1975. 12 전북옥구군미면산북리 해 면 저목장 서울특별시관악구노량진 전북군산시장미동11번지
3527-80, 82번지 지선 동 294-54번지 한일목재 계림산업(주) 차수원
공업사 오창옥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3호

공유수면 점용권리 의무 양도 양수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5년 12월 5 일

전라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

양도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 종류 목적 양수인의 주소, 성명 양도인의 주소, 성명

1975. 12 전북옥구군미면산북리 해 면 원목인양 서울특별시관악구노량진 전북군산시장미동11번지
3527-75번지 지선 윤위한돌 동 294-54번지 한일목재 계림산업(주) 차수원
제설치 공업사 오창옥

(10) 제7220호

판 보

1975. 12. 11. (목요일)

공 고

◎내무부공고제61호

1975년 11월 28일자 이웃돕기 모금에 관한 허가사

항중 한국신문협회 회장 김종규가 제출한 기부
금품 모집허가 사항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975년 12월 8일

내무부장관

구 분	당 초 허 가 사 항
1. 목적	이웃돕기 모금
2. 기 간	1975. 11. 28~1975. 12. 31 (34일간)

변 경 허 가 사 항
불우이웃 및 재일동포돕기
1975. 11. 28~1976. 1. 31 (65일간)

◎건설부공고제151호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사용개
시 및 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년 12월 8일

건설부장관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사 용 개 시 구 간	사 용 폐 지 구 간
일반국도	나로도—광주선	전라 고흥군 동강면 우둔리 1-3부터 195-8까지 (1.5km)	전남 고흥군 동강면 우둔리 210-1 부터 198-2까지 (0.4km)
"	"	전남 고흥군 파역면 파역리 476-2부 터 540-1까지 (0.7km)	전남 고흥군 파역면 파역리 177-1 부터 46-1까지 (0.75km)

◎전파관리국공고제20호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1975년도 제4회 무선종사자자격고시(임시고
시)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율)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년 12월 6일

전파관리국장

합격자명단

응시번호	본적	성	명	생년월일	비고
75283	전남	이	태인	1956. 6. 25	1
75284	"	황종우		1956. 2. 2	2
75285	"	박병무		1956. 12. 9	3
75286	"	박태일		1956. 2. 18	4
75288	"	이동성		1955. 6. 21	5
75289	"	곽홍훈		1958. 10. 5	6
75290	"	김성주		1957. 6. 28	7
75291	"	이영학		1955. 4. 24	8
75292	"	정창호		1960. 5. 15	9
75293	"	윤승훈		1955. 1. 26	10
75294	"	서동명		1956. 2. 11	11
75295	"	정근식		1955. 7. 4	12
75296	"	박남제		1957. 3. 27	13

10

344

응서번호	본 적	성	명	생년월일	비고
75297	전 남	박	태 수	1957. 2. 11	14
75298	"	신	주 영	1957. 7. 9	15
75299	"	정	충 남	1956. 5. 20	16
75300	"	윤	경 산	1955. 3. 14	17
75301	"	장	영 남	1956. 4. 26	18
75302	전 북	한	영 혁	1955. 1. 28	19
75303	전 남	박	양 호	1955. 3. 10	20
75304	"	임	경 철	1955. 5. 13	21
75305	"	정	형 셙	1957. 3. 25	22
75306	"	조	민 호	1955. 7. 25	23
75307	"	박	한 철	1956. 12. 18	24
75308	"	김	원 길	1956. 2. 11	25
75309	"	이	희 훤	1956. 9. 25	26
75310	"	정	래 용	1956. 2. 27	27
75311	"	조	발 선	1957. 11. 4	28
75312	"	문	상 빈	1957. 8. 26	29
75313	"	김	성 총	1957. 10. 22	30
75314	"	황	준 종	1955. 4. 5	31
75315	"	한	옥 순	1956. 7. 17	32
75316	"	한	숙 화	1956. 9. 8	33
75317	"	송	예 숙	1956. 4. 12	34
75318	"	황	준 식	1942. 9. 11	35
75319	"	박	상 수	1957. 5. 27	36
75320	"	서	화 석	1956. 8. 22	37
75321	"	박	창 성	1959. 1. 10	38
75322	"	김	상 문	1956. 1. 20	39
75323	"	이	병 우	1956. 8. 6	40
75324	"	조	영 수	1957. 1. 8	41
75325	"	정	동 표	1958. 1. 28	42
75326	"	김	철 수	1956. 10. 3	43
75327	"	김	종 통	1957. 11. 6	44
75328	"	배	광 윤	1957. 1. 25	45

(12) 제7220호

관 보

1975. 12. 11. (목요일)

응시번호	본 적	성	명	생년월일	비고
75329	전 남	박	순 주	1957. 1. 29	46
75330	"	김	병 호	1956. 6. 18	47
75331	"	이	춘 수	1956. 5. 10	48
75332	"	김	창 선	1957. 7. 8	49
75333	"	김	석 철	1956. 11. 7	50
75334	"	이	용 현	1958. 11. 13	51
75335	"	김	동 오	1957. 5. 9	52
75336	"	김	복 원	1955. 11. 29	53
75337	"	오	보 기	1955. 12. 22	54
75338	"	김	여 남	1957. 5. 20	55
75339	"	곽	수 남	1956. 6. 24	56
75340	"	이	동 희	1956. 9. 5	57
75341	"	김	진 평	1956. 11. 9	58
75342	"	강	해 수	1958. 2. 4	59
75343	"	강	석 식	1957. 4. 10	60
75344	"	김	이 곤	1955. 11. 11	61
75345	"	김	희 환	1957. 5. 25	62
75346	제 주	허	재 경	1958. 8. 6	63
75347	"	박	민 호	1938. 11. 16	64
75348	"	김	승 현	1956. 11. 21	65
75350	"	김	유 진	1956. 10. 1	66
75356	"	한	철	1957. 4. 2	67
75358	"	고	순 조	1956. 9. 28	68
75362	"	신	장 홍	1958. 7. 21	69
75363	"	진	경 배	1949. 3. 3	70
75464	"	현	종 립	1948. 3. 14	71
75366	"	김	태 영	1958. 8. 13	72
75368	"	부	의 현	1958. 2. 26	73
75370	"	김	상 수	1956. 9. 14	74
75373	"	허	재 용	1954. 12. 23	75
75374	"	이	경 철	1955. 12. 28	12 76
75375	"	강	길 순	1934. 2. 18	77

응시번호	본 적	성	명	생년월일	비고
75376	제 주	김	영	판	1955. 3. 29 78
75378	"	고	영	택	1956. 6. 5 79
75380	"	송	문	희	1960. 5. 19 80
75381	"	조	용	철	1955. 3. 11 81
75384	"	최	문	순	1956. 3. 20 82
75385	"	문	봉	국	1956. 1. 15 83
75386	"	정	낙	천	1931. 10. 18 84
75387	"	이	상	집	1957. 11. 17 85
75388	"	고	탁	진	1938. 10. 15 86
75389	"	정	희	진	1956. 6. 16 87
75391	"	고	영	대	1956. 2. 26 88
75393	전 남	전	대	수 ▲	1958. 12. 18 89
75395	제 주	박	성	진	1957. 8. 5 90
75397	"	김	익	수	1939. 1. 10 91
75398	"	김	도	근	1919. 11. 11 92
75399	"	문	상	익	1956. 5. 26 93
75402	"	김	덕	영	1937. 1. 23 94
75403	"	오	하	종	1948. 11. 23 95
75407	"	윤	익	수	1958. 10. 2 96
75408	"	고	성	오	1959. 1. 5 97
75409	"	현	승	운	1957. 6. 19 98
75410	"	고	길	수	1958. 9. 23 99
75411	"	김	세	용	1960. 1. 22 100
75412	"	노	경	익	1959. 9. 25 101
75413	"	김	병	석	1959. 5. 1 102
75414	"	박	원	철	1958. 1. 9 103
75415	"	강	기	오	1958. 8. 26 104
75416	"	김	병	휴	1959. 9. 28 105
75417	"	신	행	섭	1958. 5. 19 106
75418	"	이	성	배	1943. 2. 5 107
75419	"	김	홍	주	1956. 3. 26 108
75420	"	양	기	찬	1950. 6. 7 3479

1975. 12. 11. (목요일)

(14) 제7220호

관 보

응시번호	본 적	성	관	명	생년월일	비
75421	제주	김	태	완	1958. 8. 14	110
75422	"	이	동	형	1948. 1. 3	111
75423	"	고	문	도	1957. 1. 12	112
75424	"	이	장	준	1957. 8. 4	113
75425	"	강	승	태	1952. 10. 4	114
75426	"	김	춘	호	1933. 12. 14	115
75427	"	이	순	진	1942. 3. 8	116
75433	"	김	진	모	1932. 8. 10	117
75442	전 남	박	준	설	1934. 6. 3	118
75443	"	이	상	우	1946. 6. 15	119
75445	"	박	천	석	1953. 7. 12	120
75447	"	윤	병	남	1942. 5. 26	121
75448	"	허	봉	복	▲ 1951. 6. 26	122
75449	"	윤	병	태	1936. 4. 15	123
75451	"	박	준	남	1944. 3. 24	124
75452	"	정	평	화	1931. 4. 2	125
75453	"	김	정	배	1941. 7. 9	126
75454	"	박	찬	우	1941. 2. 8	127
75455	"	유	숙	희	1957. 12. 5	128
75458	"	강	정	웅	1944. 4. 19	129
75459	전 남	서	윤	동	1935. 2. 28	130
75462	"	송	영	립	1933. 2. 16	131
75463	"	이	명	호	1936. 12. 11	132
75465	"	송	선	호	1940. 5. 2	133
75466	"	장	준	열	1942. 3. 10	134
75468	"	김	성	근	1929. 6. 11	135
75469	"	김	한	수	1938. 10. 4	136
75472	"	윤	병	술	1946. 4. 24	137
75473	"	박	정	인	1943. 12. 5	138
75475	"	최	성	이	1941. 8. 21	139
75476	전 북	박	영	규	1936. 7. 30	140
75477	전 남	박	양	오	1945. 6. 5	141

14

증서번호	본 적	성	관	명	생년월일	비	고
75478	전 남	박	종	용	1941. 10. 20	142	
75479	"	이	이	차	1944. 4. 19	143	
75482	"	조	일	홍	1946. 4. 25	144	
75483	"	노	상	남	1989. 12. 9	145	
75484	"	박	일	대	1942. 5. 16	146	
75486	"	장	남	식	1937. 3. 15	147	
75488	"	조	승	인	1940. 2. 15	148	
75489	"	홍	덕	균	1934. 10. 2	149	
75490	"	박	신	배	1942. 7. 10	150	
75492	"	한	강	석	1939. 1. 22	151	
75494	"	강	정	승	1941. 12. 25	152	
75495	"	김		웅	1936. 8. 5	153	
75497	"	박	정	술	1943. 3. 6	154	
7549	"	김	영	현	1956. 9. 9	155	
75500	"	윤	경	하	1958. 4. 20	156	
75501	"	김	충	성	1956. 11. 20	157	
75502	"	오	기	운	1957. 10. 9	158	
75503	"	임	해	연	1957. 12. 8	159	
75504	"	임		백	1956. 9. 10	160	
75505	"	구	동	섭	1959. 8. 15	161	
75506	"	장	석	초	1936. 11. 25	162	
75509	"	지	홍	선	1949. 3. 5	163	
75510	전 북	임	학	천	1937. 2. 19	164	
75511	"	고	봉	상	1932. 12. 1	165	
75513	전 남	김	돈	태	1938. 7. 5	166	
75514	"	기	용	남	1957. 5. 8	167	
75515	"	김	만	권	1950. 2. 5	168	
75516	"	강	병	원	1940. 8. 15	169	
75517	"	이	만	돌	1926. 8. 10	170	
75518	"	송	철	호	1929. 1. 12	171	
75521	"	이	풍	용	1935. 5. 27	172	
75522	"	장	연	운	1943. 1. 8	173	

(16) 제7220호

판 보

1975. 12. 11. (목요일)

용시번호	본적 성	관	명	생년월일	비고
75523	전 남 송	장	호	1932. 7. 25	174
75526	" 조	영	수	1943. 5. 6	175
75527	" 쇤	병	숙	1937. 10. 12	176
75530	" 이	태	순	1950. 4. 19	177
75531	" 쇤	형	숙	1946. 1. 7	172
(총 178 명)					

법원

◎대법원고시제108호

대법원고시 제107호로 고시한 대전지방법원 강경
지원의 풍탁물 보관자 지정을 취소 고시한다.

시행일자 : 1975년 12월 6일

1975년 12월 6일

대법원장 편복기

지방행정

◎서울특별시고시제19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51호(1975. 9. 26)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학교) 시행
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

(19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
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년 12월 5일

▲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650의 8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 인덕실업고등학교
3. 면적 및 규모 : 25,347 (17,681평)
4.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
동 산76 학교법인 인덕학원 이사장 박인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5년 11월
나. 준공예정년월일 : 1976년 3월 31일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적, 지목 및 소유권

소재지	지번	지목지	적	소유자	비고
도봉구 월계동	650	대	4,962평 중	4,479평	학교법인 인덕학원
"	산92	임야	60평	"	
"	산93	"	120평	"	
"	산89-14	"	480평 중	349평	"
"	611	전	524평	"	
"	610	"	33평 중	23평	"
"	612의 1	"	151평	"	
"	606	"	3,147평 중	1,008평	"
"	산81의 13	임야	1,050평 중	967평	"
계			7,681평		

16

◎서울특별시고시제2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
 (19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자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단위 : 평

시 설 명 구 획 번 호 위	면 적 면 적 비 고
국 민 학 교 256	강남구반포동107의 14필지 4,200평
" 341	강남구서초동573의 15필지 4,200
" 168	강남구삼성동의 2 의 32필지 4,200
" 459의 2 부역	강남구대치동산4-1의 1 필지 4,200
" 674	강남구도곡동산1-3의 1 필지 4,200
소 계 5	21,000
중 학 교 347의 1 부역	강남구압구정동287의 11필지 4,500
" 58-1의 1 부역	강남구잠원동90-1의 3 필지 4,374
" 330의 1 부역	강남구서초동125의 2 의 8필지 4,500
" 427의 2 부역	강남구서초동산185의 2 4,200
" 742의 1 부역	강남구양재동1115-2의 2 필지 4,200
" 1120의 1 부역	강남구양재동122 3,700
" 1015	체비지1015-1 4,200
" 271	강남구삼성동163-29 6,271
" 401	강남구도곡동산1-1의 1 필지 5,699
" 711-1	강남구도곡동산 6 의 3 필지 4,500
" 804의 1 부역	강남구압구정동176의 24필지 4,500
" 832의 1 부역	강남구압구정동259-1의 5 필지 3,954
" 970	강남구신사동산69의 1 필지 3,992
소 계 13	58,590
고 등 학 교 42	강남구반포동345-7의 6 필지 6,960
" 596의 3 부역	강남구서초동343-2의 5 필지 5,418
" 1023의 1부역	강남구양재동526-2의 1 필지 5,950
" 918의 1 부역	강남구포이동359의 15필지 4,500

시 설 명 구획 번 호 위		치 도 면 비 고	
고등학교	367	강남구 도곡동 산 6 의 10 필지	5,000평
"	679	강남구 도곡동 산 1-15 의 23 필지	4,800
"	586	강남구 논현동 7-11	5,695
"	758 의 1 부역	강남구 압구정동 199-2 의 3 필지	5,286
소 계	8		43,608
합 계	26		123,198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도현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광활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사 령**○인사발령**

◎1975년 12월 10일자

(주성가풀대사관)

외무이사관 소진철(蘇鎮轍)

(주비어마현방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외무이사관 이문수(李文洙)

(주벨기에왕국대사관)

외무이사관 홍일(洪逸)

외교연구원 연구부 연구관에 보함

(주베네수엘라공화국대사관)

외무부이사관 변정현(邊正鉉)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에 보함

(주뉴우요오크총영사관)

외무이사관 정운철(鄭雲澈)

주고오베총영사관 총영사에 보함

(주고오베총영사관 총영사)

외무이사관 김진하(金鎮河)

주파라구아이공화국대사관 근무를 명함

◎1975년 12월 9일자

(국방부 시설국 시설과)

건축기좌 이희복(李熙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대통령)

◎1975년 12월 9일자

윤상원(尹相元)

황해도 송화군 명예군수를 위촉함

(황해도 송화군 명예군수)

한중호(韓重鎬)

원에 의하여 그직을 해촉함

(국무총리)

휘 보**○문교부**

◎1975년 12월 6일자

(직명 서기관)

성명 이경화

(직명 서기관)

성명 정경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문교부장관)

○대전세무서

영업세법 제1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영업자납세번호증

반환을 명령하였기 공고한다.

1975년 12월 8일

18

대전세무서장

남세번호반환명령통지공고자명단

영업장주	소상호	성명	업태	총	목	남세번호	교부년월일
선화	186-7 좌	동 선화식품	김경규	소매	과자류	305-04-02143	1975. 1. 30
	701-6	"	부흥상회	배병태	"	일 잡	02293
	144-3	"	대원상회	백영기	"	주류	02309
	73-9	"	영풍상회	이시재	도매	맥주, 음료수	60181
은행동	48	"	초원식품	김수현	소매	식 잡	02064
	40	선화	383-1	성광지물	송영노	"	지 풀
	76		339	해태상사	이영배	도, 소매	주류
	170	좌동		한진상회	김병찬	"	60050

○공시최고

75. 느. 5,776, 5,7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02

청구인 김 성 태(金成泰)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의 2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의 116

사건본인 김 복 순(金福順)
(부재자)

1925년 12월 30일 생

본적 및
최후주소 위와 같은 곳사건본인 김 명 주(金明珠)
(부재자)

1933년 5월 6일 생

위 사건에 대하여 당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기 일까지 신고 할 것.

1.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종의 신 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기일 1976년 6월 15일

1975년 12월 5일

서울가정법원

집판관 유향호

75.느. 7,3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77의 87

청구인 조 기 준(趙紀俊)

본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산 47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77의 87

사건본인 조 용(趙龍)
(부재자)

1941년 12월 17일 생

위 실종신고 청구사건에 대하여 당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기 일까지 신고 할 것.

1.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종의 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기일 1976년 6월 15일

1975년 12월 2일

서울가정법원

집판관 임 규운

19

75. 카. 4, 3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602의 6

신청인 보성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봉희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8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김양남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바 Q419835

1. 액 면 금984,114원정

1. 발행년월일 1975년 11월 29일

1. 지급인 주식회사 조홍운행영등포지점

1. 발행인 보성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봉희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5. 카. 4, 378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1동 339의 12

신청인 이춘익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15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김양남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2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라1805454 금100,000원정

라1805453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5년 11월 29일

1. 발행인 및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사당동예금
지급인 취급소

1. 발행지 서울특별시

1. 수취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5. 카. 4, 379

서울특별시 관악구 흑석동 221

신청인 임철순(任哲淳)

재단법인 영신아카데미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15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김양남

증서의 중요한취지

증권의 종류	증권 번호	액 면	발행일자	발행인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인	최후소지인
1주권	841	금500원정	1963. 2. 22	동양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동양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재단법인 영신아카데미
"	842	"	"	"	"	"	"	"
"	843	"	"	"	"	"	"	"
"	844	"	"	"	"	"	"	"
10주권	818	금5,000원정	"	"	"	"	"	20
50주권	8	금25,000원정	"	"	"	"	"	"

75. 카.4.4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37

신청인 김학수(金學洙)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8일 10시
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김양남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류 자기앞수표

1. 번호 라01787294

1. 액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4년 5월 13일

1. 지급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공합출장소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5. 카.4.403

경북 청도군 청도면 태전동 543

신청인 김태열(金泰烈)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15일 10시
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광희

증서의 중요한취지

종류 번호 액면 발행년월일 지급년월일 발행인 지급인 최후소지인

약속어음 기차사 금 5,000,000원정 1975. 11. 19 1976. 1. 10 이수영 중소기업은행대 신청인
262430 신동지점

262411 금 5,298,725원정 1975. 11. 9 1976. 1. 20 " "

75. 카.4.447

대구시 북구 칠성동 1가 17

신청인 정규칠(鄭奎七)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15일 10시
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원기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류 당좌수표 2매

1. 번호 및 액면

번호 액면

333793 공란

333799 공란

1. 발행년월일 공란

1. 발행인 공란

1. 지급인 달성군농업협동조합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5. 카.4.4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1의 10

21

신청인 이정웅(李正雄)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 3월 15일 10

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시기 위하여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5년 12월 5 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김 원 지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국민주택채권 16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00010042	금 1,000,000원정
00011826	금 500,000원정
00160649	금 100,000원정
00160698	금 100,000원정
00160699	금 100,000원정
00160700	금 100,000원정
00157521	금 100,000원정
00157522	금 100,000원정
00107099	금 50,000원정
00635321	금 10,000원정
00635322	금 10,000원정
00635323	금 10,000원정
00629733	금 10,000원정
00264439	금 5,000원정
00141445	금 3,000원정
00137805	금 3,000원정

1. 발행인 및 한국주택은행대구지점 광평동출장소

1. 발행년월일 1975년 10월 31일

1. 상환일 1980년 10월 31일

1. 발행지 대구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제 권 판 결

75. 카. 2,732

대구시 동구 신암동 1270의 1

신청인 김 영 창(金榮昌)

다음 기재 증서에 대하여 1975년 11월 17일 10시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5년 12월 8 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김 원 기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매

1. 번 호 WIJ 581951

1. 액 면 금 128,000원정

1. 발행인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지점

1. 발행년월일 1975년 7월 30일

1. 발행지 대구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5. 카. 2,868

대구시 중구 인교동 160

신청인 김 영희

다음 기재 증서에 대하여 1975년 11월 17일 10시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5년 12월 8 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김 원 기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801689

22

356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5년 8월 26일
 1. 발행인 최영한
 1. 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대구서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판 결

75.카.1.164

광주시 동구 충장로 5 가 80

신청인 차재운(車載運)

다음 기재 증권에 대하여 1975년 12월 3일 10시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다음 기재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5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선석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가00289230가
 1. 액 면 금7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5년 8월 7일
 1. 발행인 및 주식회사 광주은행 학동지점
 1. 지급인
 1. 발행지 광주시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975. 12. 11. (목요일)

관
 제7220호
 면당
 단가
 1
 원
 원

시·도 관보 보급 총국 일람표

시도별	보급소명	소 재 지	전 화
서 울	대한공론사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31	75-6161~9 75-6315
부 산	부산 총 국	부산시서구동대신동 1가186	43-9965
경 기	경 기 총 국	경기도수원시매산동20-9	6139
경 남	경 남 총 국	부산시서구동대신동 1가186	43-9965
경 북	경 북 총 국	경북대구시완전동 5	4-8294
전 남	전 남 총 국	전남광주시동꾸금남로 1가19	2-1185
전 북	전 북 총 국	전북전주시고사동 1가11-14	2-3767
충 남	충 남 총 국	충남대전시대흥동493-1	2-6828
충 북	충 북 총 국	충북청주시서운동48-1	2972
강 원	강 원 총 국	강원도춘천시요선동145	3552
제 주	제 주 총 국	제주도제주시 3도 2동1118	5661

편집
 종
 무
 처
 (7)
 6
 1
 6
 1
 9